



화재 피난행동요령

아파트 입주자



관계부처 합동

Contents



1 -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3
2 - 화재 피난행동요령(인포그래픽)	4
3 - 화재 피난행동요령(요약)	5
4 - 적용 범위	6
5 - 대피 전략	6
6 - 화재피난 행동요령	7
7 - 피난가이드 활용	16
[참고1]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 가이드	17
[참고2]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19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구분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상황 유형	대피가 가능한 경우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행동 요령	① 대피	② 구조요청	③ 대기	④ 대피 또는 구조요청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 ①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 ② 구조요청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한다.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비고) '다른 곳'이란,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임



화재 피난행동요령(인포그래픽)

▶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자기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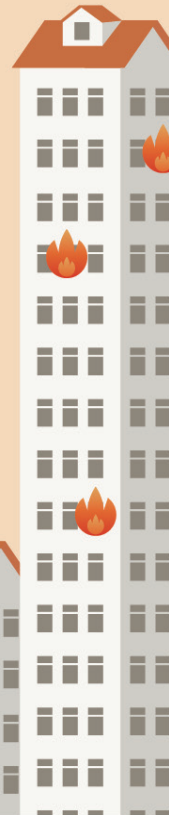
-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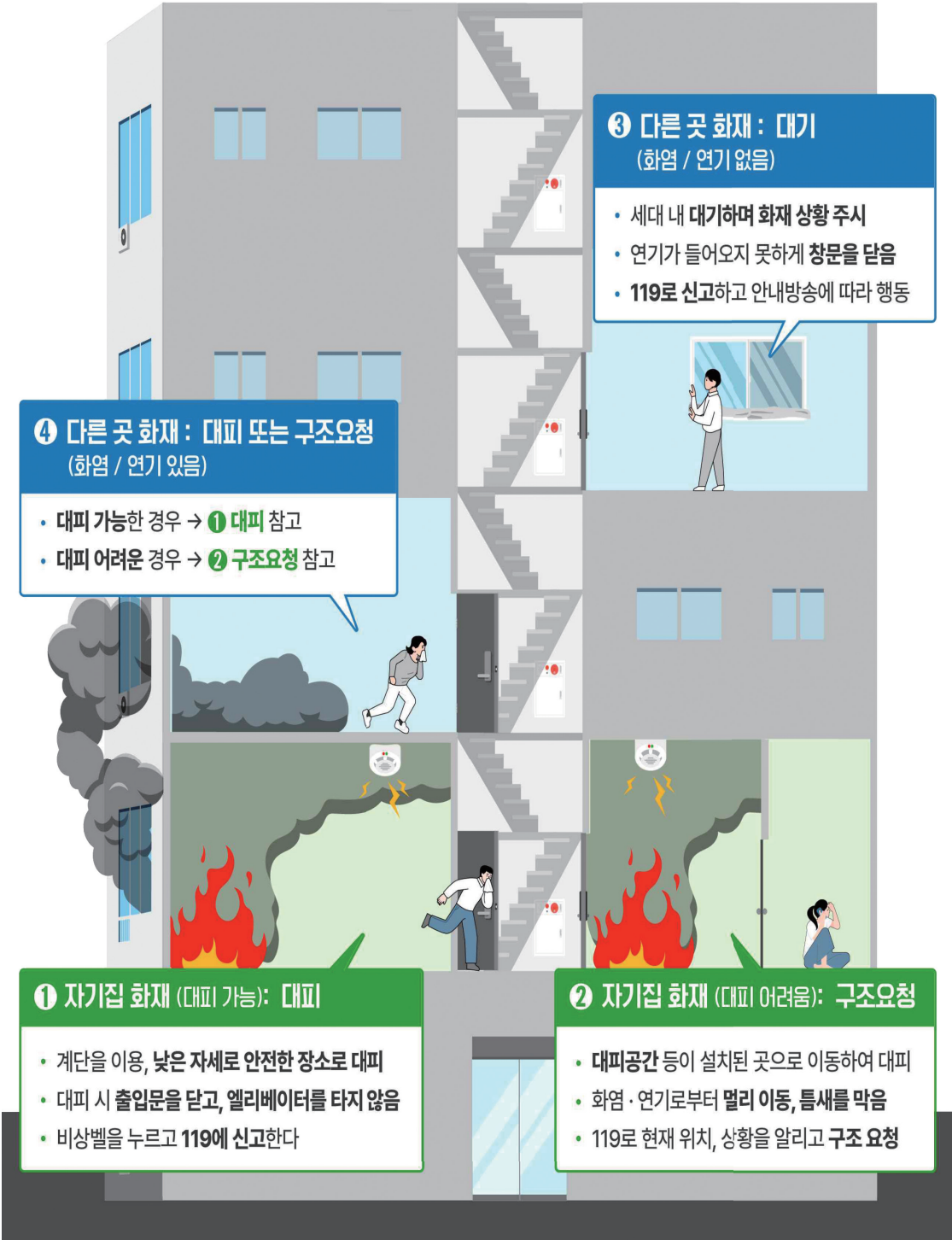
-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1.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2.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곳 :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요약)





1 적용 범위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에 대하여 적용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됨)

2 대피 전략



- 🔥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구조·환경적 특성에 맞춘 피난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
- 🔥 일반적 대피절차는 화재위치(자기 집 vs 다른 곳)에 따른 유형별 화재상황(4가지)에 따라 행동요령 구성(대피, 구조요청, 대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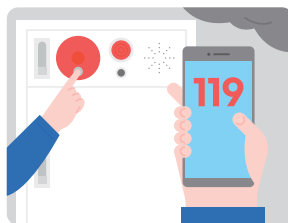


※가연성 외장재 시공 대상은 화재 시 건물 바깥으로 우선 대피토록 안내

▶ 화재발생위치 및 상황에 따른 대피전략 ◀

대피절차	대피방법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1 상황유형	대피 가능 (현관)	대피 불가 (현관)	화염/연기 들어오지 않음	화염/연기 들어옴
2 행동요령	화재 전파(세대원)			
	1 대피	2 구조요청	3 대기	4 대피 또는 구조요청

* '다른 곳'이란,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 공용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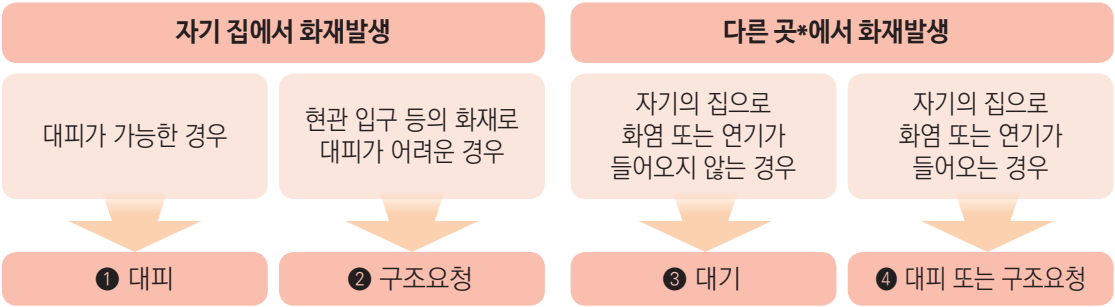
3 화재피난 행동요령

1 [상황유형] 화재상황 및 대피 여건을 판단한다.

🏠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기준

-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기준은 ▲화재발생장소(자기 집 vs 다른 곳), ▲피난여건(세대 밖으로 피난 가능여부), ▲화재확산상황(화염/연기의 유입 여부) 등을 종합 고려

▶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기준 ◀




* '다른 곳'이란,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 공용부분임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1-1.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 ① 대피

1-2. 현관 입구 등에서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② 구조요청



🏠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 **판단기준** ▶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발생위치 및 화염·연기의 확산여부 등을 고려해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
 -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 : 대피
 - 현관을 통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 구조요청
- **대피** ▶ 세대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최선의 선택은 세대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으로 현관을 통해 지상층(또는 옥상층) 등으로 이동
- **구조요청** ▶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제한되는 상황(하단 참조)으로 세대원이 세대 내 고립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제한되는 상황(세대 내 고립되는 경우)

- 현관(인근)에 적치한 물건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가 어려운 경우
- 세대 내 발생한 화염·연기로 인해 현관문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화재 사례

2019년 9월 광주시 소재 아파트 현관문 쪽 거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현관문이 막혀 50대 부부가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 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 1-3.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③ 대기
- 1-4.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④ 대피 또는 구조요청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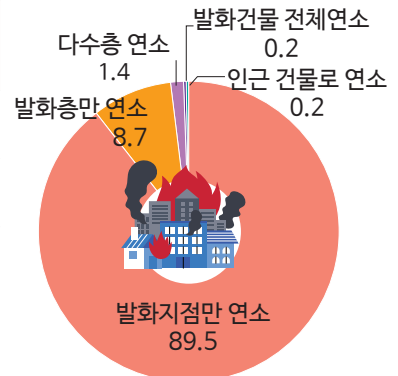
- 판단기준 ▶ 자기 집 외의 장소(다른 세대 또는 주차장 등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확산 상황에 따라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대피
- 화염·연기 영향이 없는 경우 ▶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 상 대부분의 화재가 발화층 이내로 국한됨에 따라 무리하게 피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대기 가능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

- 공동주택 화재 시 대부분(98.2%) 발화지점 및 발화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 됨에 따라,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1.4%)

▶ 연소확대 범위별 현황('19~'21년) ◀ (%)

구분	발화지점만 연소	발화층만 연소	다수층 연소	발화건물 전체연소	인근 건물로 연소
합계	12,493건	1,210건	195건	23건	34건
점유율	89.5%	8.7%	1.4%	0.2%	0.2%



※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19~'21년 통계자료)



화재 사례 (무리한 피난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23.3.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10층 세대 내로 화염·연기 확산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

화재아파트 입주인 인터뷰 ('23.3. 수원시 아파트 주민 인터뷰 결과)

- 화재 시 항상 외부로 탈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연기로 인해 세대 내 안전한 곳에서 구출될 때 까지 대기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2층 거주자)
- 당시 고층은 세대 내에 머무르고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피해가 적었을 것임 (15층 거주자)

- (화염·연기 영향이 있는 경우) 화재의 특성상 아랫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윗세대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로서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임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옆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세대로 전파되는 경우(특히,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피난 중 출입문을 개방함에 따라 급속한 연소 확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도 화염이나 연기의 영향 가능
 - 다만, 대피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신중한 대피가 필요하며 화재진압 과정에서도 상당수 인명 피해가 초래되므로 진압보다 대피먼저

공동주택 인명피해 특성

-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서 39.1%, 화재 진압 중에서 18.1%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19~'21년)** ◀

대피 중		구조 요청중		화재 진압중		화재현장 재진입		행동 불가능		비이성적 행동		미상		기타 행동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49	604	1	187	6	297	0	6	45	66	5	28	83	135	6	152
39.1%		11.3%		18.1%		0.4%		6.6%		2.0%		13.1%		9.5%	

※ 출처 : 화재통계연감('19~'21년 통계자료)



2

[행동요령]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대기·구조요청 등을 한다.

공통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화재사실 전파

- 화재가 야간에 발생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수면 중이나 주취 상태이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사실 전파 필요
- 또한, 피난약자(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청력·시력 등의 장애(저하)로 인해 화재 인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난약자에 대해 별도의 화재사실 전파 요구

▶ 공동주택 사상 전 인적상태('18~'22년) ◀

수면중	음주상태	장애*	약물복용상태	관리자 부재
589(20.8%)	197(7.7%)	152(5.4%)	24(0.8%)	8(0.2%)

*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18~'22년 통계자료)

주) 장애: 정신, 지체, 뇌병변, 청각, 신장, 시각, 언어, 발달장애 포함



수면중(20.8)



음주상태(7.7)



장애(5.4)



약물복용상태(0.8)



관리자 부재(0.2)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대피가 가능한 경우 : ① 대피

🔔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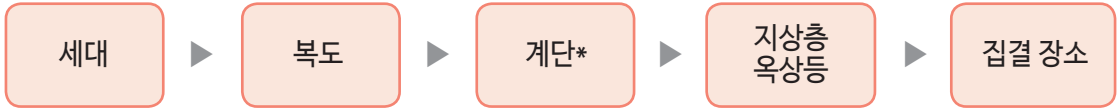
- 대피 시 세대 밖으로 나와 복도 및 계단을 경유하여 지상층(지상층으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는 옥상층)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피난 시 출입문 확인요령

- 출입문(손잡이)을 열기 전 손등으로 출입문이 뜨거운지 여부를 확인
- 만일 출입문이 뜨거울 경우, 반대편에 불길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 화재 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상층부의 유독가스로부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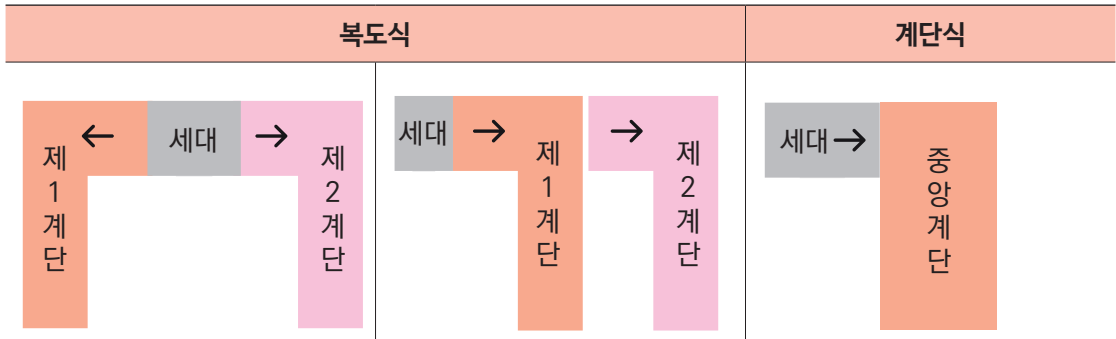
▶ 계단을 통한 대피유도 경로 ◀



*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경우, 가까운 계단 → 반대편 계단 순으로 대피 유도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계단을 이용하되, 해당 계단이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부터 영향이 있는 경우, 반대편 계단으로 대피
- 다만, 복도식의 경우도 아래 그림의 경우처럼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피난 경로도 있으므로 평상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난경로 확인절차가 필요
- 복도,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경우, 반드시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할 수 있는지, 안전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판단

▶ 공동주택(아파트) 구조에 따른 대피경로 ◀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대피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현관문이 개방되면 계단 등 수직통로를 통해 다량의 연기(유독 가스) 등이 빠른 속도로 상층부로 이동하므로 주의필요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화재 시 뜨거워진 연기가 승강로를 상승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로 침투하여 질식을 유발하거나, 정전 등의 이유로 정지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힐 수 있어 위험(피난용승강기는 이용 가능)

사고 사례 ⚠

- ▶ 2018. 1. 밀양 시 세종병원 화재 시 간호사 등 6명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두 사망
- ▶ 2022. 9.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3명 사망



비상용 vs 피난용 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소방활동용으로 승강장에 창문·배연설비 등을 설치 소방활동에 용이하게 함
- **피난용승강기** ▶ 피난용으로 승강로에 배연설비·승강장에 제연설비 설치로 피난시 승강기로의 연기 침투를 차단하기 위함.

▶ 비상용 vs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

구분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근거	건축법 제64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건축법 제64조제3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설치 대상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30층이상* * 건축법 개정('18.4.17.)으로 30층이상 모든건물에 피난용 설치의무('18.10.18. 시행) 기존에는 준초고층 공동주택은 제외
	높이31m이상 (건축법개정 '92.6.1)	16층 이상 → 10층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개정 '07.7.24.)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대피 과정에서 복도에 위치한 비상벨(발신기)을 눌러 화재사실을 전파(경보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외)
-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또는 고립된 상황) 등을 알려주며, 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름

화재신고 예시

119

아파트 소재지 및 명칭 ▶

화재 상황 ▶

피해(사상자)여부 ▶

상황요원 안내

- **위치** ▶ 00구 00동 000에 소재한 000아파트 00동 00호입니다.
- **상황** ▶ 현재 우리집 00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난 중입니다.
- **피해** ▶ 지금 000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숨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내** ▶ <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대피가 어려운 경우 : ② 구조요청**

🔔 피난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 내 피난 설비를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
- 대피공간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화염·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량 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 가능(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

▶ **아파트 세대내부 피난설비** ◀



- (비고) 1. “대피공간”이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의 공간
 2.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화재시 쉽게 부수고 대피 가능
 3. “하향식피난구”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 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비

피난 사례

- ▶ 2016. 2.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7층 주방에서 화재발생 시 일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
- ▶ 2019. 9. 전남 광양시 44층 통로에서 화재 발생 시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발코니로 이동하여 외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방 내부로 유입되는 연기(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문 틈새를 막는다.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또는 고립된 상황) 등을 알려주며, 현재 고립된 장소 및 인원 등을 통보하여 이후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름

화재신고 예시 119

아파트 소재지 및 명칭 ▶

화재 상황 ▶

현재 위치 통보 ▶

119 상황요원 안내

- 위치 ▶ 00구 00동 000에 소재한 000아파트 00동 00호입니다.
- 상황 ▶ 우리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현관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구조 ▶ 지금 아파트 대피공간에서 가족 3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구조요청 바랍니다.
- 안내 ▶ <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③ 대기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세대 밖으로 피난하지 않으며 세대 내에서 대기
- 세대 내 대기하는 경우라도 창문 등을 통해 화재확산 및 소방당국의 소화·구조활동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 향후, 화재가 확산하여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유입되는 경우, 즉시 피난

대피 또는 대기 결정

- ▶ 화재 발생 시 최선의 선택은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임. 다만, 복도·계단이 연기(유독가스)로 오염되거나 피난약자(이동장애 등)의 경우는 무리한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세대 내로 화염이나 연기 등의 직접적 유입이나 영향 등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세대 내 일시 대기)
- ▶ 특히, 아파트는 화재 통계 상 다수층으로 연소확대 비율이 매우 낮다(1.4%)는 점, 이에 반해 대부분(39.1%)의 인명피해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
- ▶ 나아가, 아파트는 구조 상 계단 등 수직경로를 통한 연기확산이 빠르고, 양방향 피난이 제한(계단식 아파트)되며 다수의 피난약자(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가 거주하는 등 피난안전에 다양한 제약이 존재

🔔 열린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만일 창문 등이 열린 경우, 연기가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창문 등을 모두 닫는 등 안전조치 실시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아파트의 주소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위치 및 화염·연기 등의 확산 상황을 알려주며 현재 세대 내 대기인원 및 장소 등도 통보
 - 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 및 안내방송 등에 따라 행동

화재신고 예시 119

아파트 소재지 및 명칭 ▶
 화재 상황 ▶
 대기인원 및 장소 ▶
 119 상황요원 안내

- 위치 ▶ 00구 00동 000에 소재한 000아파트 00동 00호입니다.
- 상황 ▶ 지금 0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집으로 화염, 연기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대기 ▶ 현재 세대 내 발코니에 가족 3명 모두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 안내 ▶ <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④ 대피 또는 구조요청**

🔔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 대피

-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①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시 “대피” 설명자료 참조

🔔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 구조요청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에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②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시 “구조요청” 설명자료 참조





4 [인] 재난가이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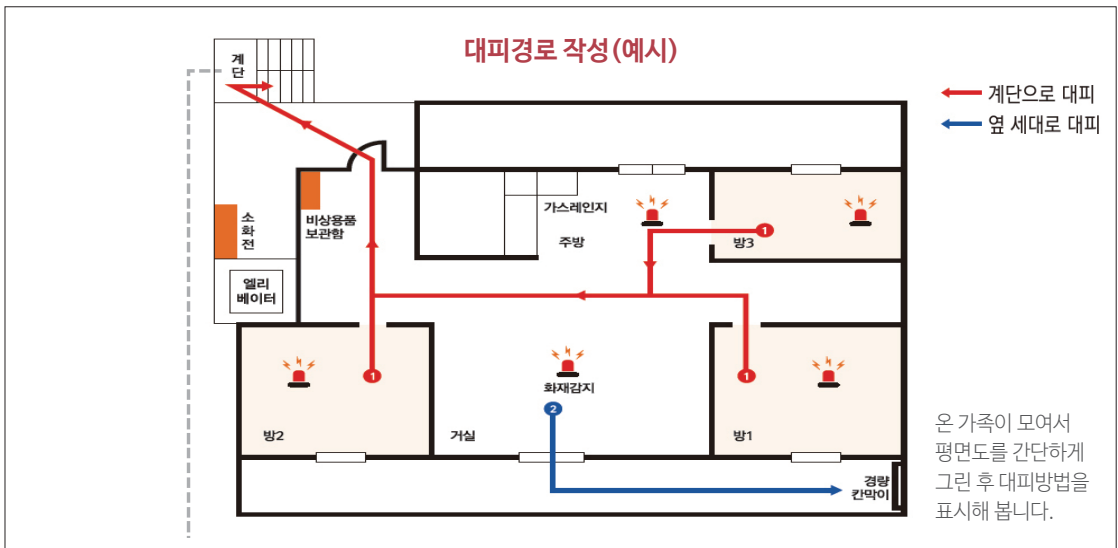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 작성 및 공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 **환경조사** ▶ 피난계획을 수립하기 전 우리 아파트의 피난환경 조사
 - 세대내 피난시설 : 대피공간,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 세대의 피난시설 : 피난계단, 옥상대피(출입문 개방) 등
- **대피계획** ▶ 가족 구성원 모두 동참하여 화재 시 대피계획 수립, 세대별 평면도를 그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모든 경로를 표시

1 상황유형			2 행동요령	
자기 집	대피 가능(현관)	→	화재 전파 (세대)	→ ① 대피
	대피 불가(현관)	→		→ ② 구조요청
다른 곳	화염/연기 유입(×)	→		→ ③ 대기
	화염/연기 유입(o)	→		→ ④ 대피/구조요청

- **행동하기** ▶ 상황별 대피전략에 적합한 대피 행동요령 연습
 - 연 2회(상·하반기) 이상 가족이 참여한 대피연습 실시
 - 대피 시 출입문(현관, 출입문, 방화문) 닫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음



- **캠페인** ▶ 입주민 대상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참고 1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 가이드

1 대피계획 수립하기

- 우리 아파트의 피난환경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환경을 조사한다.
- 화재 시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대피계획을 수립합니다.
- 대피계획 수립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참하고 계획을 공유합니다.
- 대피절차 이해, 대피경로 작성 및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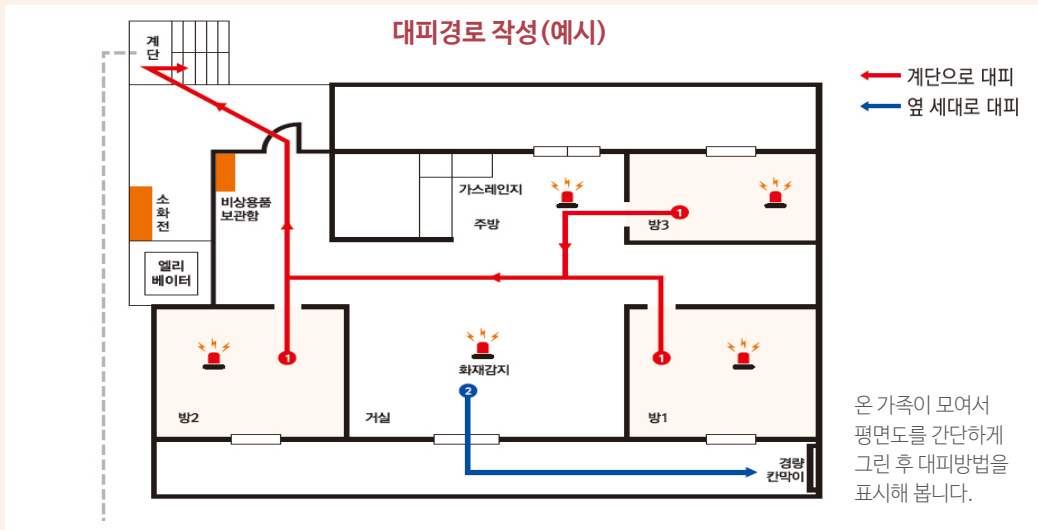
2 대피절차 이해하기

※ 화재 시 화재상황 유형별 적절한 대피 행동요령에 따릅니다.

1 상황유형		→ 화재 전파 (세대)	2 행동요령	
자기 집	대피 가능(현관)		→	① 대피
	대피 불가(현관)	→	② 구조요청	
다른 곳	화염/연기 유입(×)	→	③ 대기	
	화염/연기 유입(o)	→	④ 대피/구조요청	

3 대피경로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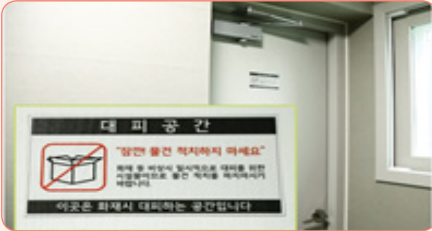
※ 세대별 평면도를 그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모든 경로(출입문→복도→계단)를 표시합니다.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경로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 세대 내 피난설비(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위치를 표기



4 소방·대피시설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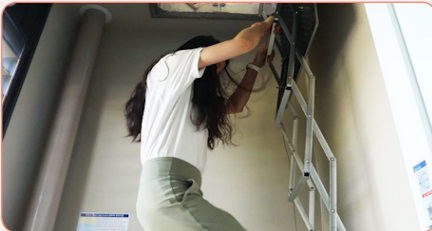
▶ 대피공간

-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요청
- * 대피공간 내 물건 적치 금지



▶ 경량칸막이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재 시 쉽게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
- * 경량칸막이 앞 장애물 적치 금지



▶ 하향식 피난구

- 발코니를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
- * 하향식 피난구 덮개 개방 시 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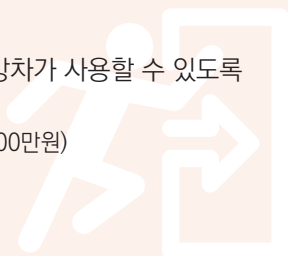
▶ 옥상층 대피

- 화재로 인해 지상층으로 피난 곤란한 경우 옥상층으로 대피
- * 옥상문은 화재 시 자동개폐, 필요시 수동 스위치 조작



▶ 소방차 전용구역

-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기
- *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100만원)



5 대피 연습하기

-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여 대피 연습을 연 2회 실시합니다.
- 다양한 피난 경로(지상층, 옥상층) 및 피난기구 사용법을 연습합니다.
- 대피 연습이 끝나면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개선할 점을 토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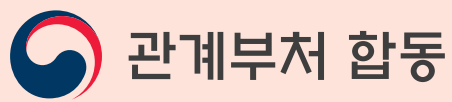
참고 2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구분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상황 유형	대피가 가능한 경우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행동 요령	① 대피	② 구조요청	③ 대기	④ 대피 또는 구조요청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①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② 구조요청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한다.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비고) '다른 곳'이란,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임



관계부처 합동